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44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자 : 임의자 · 안상훈 · 김기현

김위상 · 조지연 · 유용원

김소희 · 우재준 · 윤상현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녹조 발생 여건이 심화되고 있어 2024년에는 녹조경보 발령일수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이로 인해 먹는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녹조발생의 원인 규명과 모니터링 등 녹조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녹조 연구역량의 분산 및 연구 지속성 부재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 상관관계를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기능의 일원화 및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국가녹조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을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녹조연구센터(이하 “녹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녹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을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2.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추진 및 조정
3.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저감효과 평가
4. 녹조 저감효과 분석 등 「하천법」에 따른 댐, 보 등의 하천시설 운영 지원
5.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녹조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녹조연구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6(국가녹조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을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의 녹조 공동조사,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등 녹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녹조연구센터(이하 “녹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u>② 녹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을 고려한 녹조 발생 예측</u> <u>2. 관계기관간의 녹조 공동 조사·연구사업의 추진 및 조정</u> <u>3. 녹조 예방·제거·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저감효과 평가</u> <u>4. 녹조 저감효과 분석 등 「하천법」에 따른 댐, 보 등의 하천시설 운영 지원</u> <u>5.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u>

6. 그 밖의 녹조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녹조연구
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